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www.kkpc.com

금호석유화학

ESG 정책 및 지침서

안전환경보건 방침
인권·노동 경영 방침
윤리경영 방침
지속가능한 조달 방침

금호석유화학 협력사 행동강령
조세 전략
이사회 구성 방침

Contents

- 03 안전환경보건 방침
- 11 인권·노동 경영 방침
- 15 윤리경영 방침
- 24 지속가능한 조달 방침
- 26 금호석유화학 협력사 행동강령
- 28 조세 전략
- 29 이사회 구성 방침

안전환경보건 방침

제정: 2021.04.06

개정: 2022.06.24

금호석유화학은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 화학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와 회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무재해 사업장의 구현과 환경 보호는 회사 전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임무로, 모든 업무에 안전환경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안전환경보건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위해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지속적인 안전환경보건 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3. 회사의 모든 기반 시설, 연구개발 활동 및 생산 활동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환경보건 관련 법규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4. 안전환경보건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관련 교육 훈련, 의식 향상, 기술 개발 등 안전환경보건에 친화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5. 안전환경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종사자,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경영에 안전환경보건을 최우선하려는 의지와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

환경경영 실천 지침

1. 환경 리스크 관리 및 운영 절차 수립

사업장별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인증 기반의 환경경영 체계 운영을 수립하고, 환경법규 준수 및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며, 환경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한다.

2. 제품/생산 환경

저탄소 및 재생 원료 기반 제품 개발과 재활용 제품 확대를 통한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에 힘쓰고, 설비 신증설, 신제품 개발 및 제조공정 변경, 신규자재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3.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금호석유화학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및 목표 설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감축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이바지한다.

에너지 절감 노력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내부 검증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제3자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역오염 관리

1) 대기오염 관리

금호석유화학은 대기환경보전법규의 준수 및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대기오염 관련 법규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설치 및 가동 운영 시 운영기록부를 작성한다.
- ② 정기적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대기오염물질(NO_x,SO_x,먼지 등) 모니터링 및 자가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 분석을 통해 설비 운영상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자가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 ④ 생산공정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 후 적정 운전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개선 검토 및 개선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악취 관리

각 사업장의 주관부서는 관련 법규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법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해당 사업장의 악취관리법상 악취관리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악취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의 활동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에 책임을 다한다.

- ① 법규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② 정기적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굴뚝별로 악취가 자가측정되도록 한다.
- ③ 자가측정 분석을 통해 설비 운영상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자가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 ④ 생산공정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 후 적정 운전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개선 검토 및 개선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토양 관리

금호석유화학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 사용물질의 관리 및 저장시설에 필요한 토양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특정 토양오염물질 누출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시행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거나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시설의 설치, 개선 또는 토양정밀조사, 토양정화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음 관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공장부지 경계선에 따라, 그리고 소음 노출시간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소음을 관리하고, 소음측정 결과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의 개선 활동을 통해 소음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질 관리

금호석유화학은 물환경보전법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위해 각 사업장별 오·폐수 처리 표준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처리하여 배출함으로써 수질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사업장별 수질오염 물질로 인하여 사업장 내외 환경사고를 유발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행한다.

- ① 유입 폐수의 상태 점검
- ② 방지시설의 운전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 ③ 방류수의 수질 및 유량관리
- ④ 폐수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검토 및 시정조치
- ⑤ 폐수처리 원단위 관리
- ⑥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운전 및 법적 허용기준, 사내 배출허용기준 유지관리
- ⑦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 ⑧ 폐수 SLUDGE 반출처리
- ⑨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공정폐수 수질관리
- ⑩ 폐수관련 시험분석 및 결과 통보
- ⑪ 자가측정 및 분석 Data 관리
- ⑫ 폐수관련 시험분석에 대한 개선 검토
- ⑬ 오·폐수처리 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및 관련계기 검·교정
- ⑭ 폐수 종말처리장 유입시 폐수배출권 확보

6. 화학물질 관리

금호석유화학은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적법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작업자의 위해를 예방하고 재산상의 손실 및 지역사회 환경영향에 책임을 다한다.

사업장에서 신규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확보하고, 사용가능 여부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화학물질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한다.

7. 폐기물 관리

각 사업장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소,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률 향상 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

공장의 조직 활동 및 제품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업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각 사업장별 폐기물 저감 및 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한다. 또한 배출 공정 개선과 같은 저감 활동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8. 생물다양성 실천 지침

금호석유화학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소중히 하며, 경영활동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 파괴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① 모든 임직원은 생물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토지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약(World Heritage areas, IUCN Category I-IV protected areas)을 인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한다.
- ③ 주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사업 진행 시에는 사전에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④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확인하고 지역의 특성, 상황에 적합한 생물다양성 유지 활동을 실행한다. 중요한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생물다양성 관련 손실이 없도록 방지하고(No Net Loss),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Net Positive Impact)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임직원 및 지역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실행한다.

안전보건 실천 지침

1. 안전보건 목표 및 운영 절차 수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을 통한 성과 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수립시 법적 준수의무사항 및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관련 활동에 대한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운영 절차가 필요한 안전보건 활동
 - (1) 작업장의 안전조치
 - (2) 중량물, 운반기계에 대한 안전 조치
 - (3) 개인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4)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
 - (5) 떨어짐, 무너짐에 대한 방지 조치
 - (6) 안전검사 실시
 - (7)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 활동
 - (8) 전기 재해 예방 활동
 - (9)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 활동
 - (10) 근로자 건강 장애 예방 활동
 - (11) 협력업체의 안전 보건 활동 지원
 - (12) 안전, 보건 관계자 역할과 활동
 -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14) 산업재해 조사 활동
 - (15)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
- ② 작업 내용 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 예방 조치
- ③ 안전작업 허가 제도 운영

2. 화학물질 안전 관리

사업장내 제조, 수입,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한다. 제출된 MSDS를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설비에는 유독물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등을 비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지속적인 유독물 시설 점검을 통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행한다.

- ① 위험요인 제거
- ②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프로세스, 운영, 물질 또는 장비로 대체
- ③ 공학적 관리 방법 사용 및 업무 재 조직
- ④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관리 방법 사용
- ⑤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사용(개인 보호장구 PPE는 근로자들에게 무상 제공)

당사 직원의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구성원의 심신 안정 및 건강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주관부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계획서를 참조로 하여 자체 HSE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HSE교육훈련은 사업장별 요구되는 법정 교육, 직무 교육, 환경/안전/보건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환경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행함으로써 환경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도록 한다.

- ① 법정교육
 -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 (2) 안전관리자 교육
 - (3) 보건관리자 교육
 - (4)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 (5) 관리감독자 교육
 - (6) 환경기술인 교육
 - (7)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8)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② 직무교육
 - (1) 대외기관 위탁 교육
 - (2) 사내 직무 교육
- ③ 사업장내 환경/안전/보건 교육
 - (1) 신규 채용시 교육
 - (2) 작업 변경시 교육
 - (3) 환경안전보건 정기교육
 -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 종합 환경안전보건 교육

5.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금호석유화학 사업장 주관부서는 중대산업 재해, 사망 등 중대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상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을 작성하고, 잠재적인 비상 상황에 대해 준비 및 대응에 관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비상시 대피 절차와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의 제공, 비상 상황으로부터 불리한 안전환경보전에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 계획, 대응 준비
- ② 계획된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및 실제적인 비상 상황 대응
- ③ 비상 상황과 잠재적 안전환경보전 영향의 규모와 관련된 비상 상황의 결과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
- ④ 실행 가능할 경우 계획된 비상 대응 능력에 대한 주기적 시험 및 훈련
- ⑤ 특히 비상 상황의 발생이나 시험 이후에는 프로세스와 계획된 대응을 주기적으로 검토 및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 보완
- ⑥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와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의사소통 진행
- ⑦ 필요한 경우 조직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도급업체, 방문객, 비상 대응 서비스, 정부 기관 및 지역 단체)에게 관련 정보 및 훈련 (비상상황의 준비 및 대응) 제공
- ⑧ 계획된 대응의 개발 단계에서 적절하게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보장하고, 그들의 니즈(필요성)와 능력을 고려
- ⑨ 비상 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 현황 및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연락 체계

6. 고객사 안전보건 관리

금호석유화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이 당사 제품 취급시 안전 문제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가 취급하는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용기 또는 포장지에 경고 표지나 적법한 라벨을 부착하여 출고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당사 사업장 내 상주 협력회사 및 공사 도급업체, 출하운송업체, BOX조립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원부재료 납품업체 등 협력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당사 안전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다음의 도급작업의 경우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사전 발급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고온·고압의 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차 있거나 차 있었던 파이프라인, 펌프 또는 용기 등과 같은 기기의 분해 작업
- ② 용접, 절단 또는 스파크나 다른 점화원을 발생하는 전기적이 아닌 화기 작업
- ③ 용기 출입 입조 작업
- ④ 가연성 물질이 들어 있는 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작업
- ⑤ 굴착 작업
- ⑥ 크레인을 이용한 중요 인양 작업
- ⑦ 전기 작업
- ⑧ 고소 작업
- ⑨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연간 업체 평가/감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감사팀을 구성하여 평가 양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사업장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협력회사의 기술 및 안전교육 지원, 포상금 제도 등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한다.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각 사업장의 주관부서는 외주업체 근로자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필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 의사소통 관리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의 민원 발생시 안전환경팀장은 적극적으로 민원 내용을 입수하고, 필요 정보에 대하여 선별 검토하여 승인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공된 자료, 정보에 대해 대책 수립 및 회신 여부에 대하여 검토 결정한다. 관련팀에서 수립한 대책이 적절한 경우 그 대책을 관련 업무에 반영시키고, 지역 민원의 경우 처리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필요시 공장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환경/안전보건 정보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또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 업무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해결이 어려우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당사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 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인권·노동 경영 방침

제정: 2020.11.16

개정: 2022.06.16

금호석유화학은 “존중”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존중의 자세를 지향하며, 기본적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이에 근거한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을 본 인권·노동 경영 방침을 통해 내재화하고자 한다.

금호석유화학은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전세계 모든 사업장과 이에 속한 구성원에게 본 인권·노동 경영 방침을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 확립, 모니터링 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더 나아가 본 방침을 당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고객, 협력회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인권·노동 경영 실천 지침

1. 인권 존중

금호석유화학의 모든 구성원 및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 학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성적 차별이나 학대, 또는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구성원의 인권 의식 향상에 힘쓴다.

2.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

고용, 보상, 교육, 업무 등의 기회를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학력, 인종, 종교, 국적, 출신지역, 연령,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장애, 성적체성 등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3. 아동노동 금지

사업장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한 안전 보건상 위험 •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4. 강제노동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 채무 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 육체적 구속을 통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결사의 자유

사업장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금호석유화학은 단체교섭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마다 정기 및 수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원활한 노사간 소통체계를 확립한다.

6. 채용

금호석유화학 인재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을 진행하며, AI 면접, 블라인드 면접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용 과정에서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훈대상자와 같은 소수 그룹을 위한 가점 제도 또는 별도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7. 임금

모든 구성원의 임금은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8.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근로 제공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9. 근로환경

다음의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탄력적 활용을 지원하며, 직원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①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절차를 통해 탄력 근무 계획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 주 근무일에 사용하여 평균적으로

구성원의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시차 출퇴근제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도를 선택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선택가능 시차 출퇴근제 : ①07시~ 16시 ②10시~ 19시 ③13시~ 22시

회사는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고, 구성원의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 사업장 PC OFF 제도를 적용한다. 부득이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 탄력 근무제도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직원의 출산 및 보육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를 적극 장려하며, 임신 초기 및 출산 임박 시기의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한다.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 대해 원부서에 복귀하도록 하며 복직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0. 인재육성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직급별 집합 교육과 직무별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 신입사원에게는 3주간의 집합 교육과 2년차, 3년차 교육 및 멘토 지정 등의 회사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 계획 수립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비용과 특정 직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11. 인사평가 및 만족도 조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성과 관리를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과 승격에 반영하도록 한다. 매년 초 각 구성원은 KPI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 점검, 최종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자기 평가와 평가자 면담 및 평가 피드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12. 인권 침해 사례 제보 및 구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금호석유화학 사이버 제보실(온라인 프렌즈*) 웹사이트 및 담당부서에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하여 제보가 가능하며, 당사의 제보자 보호원칙에 따라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보호한다. 인권 침해 제보 유형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차별 행위, 강제노동, 아동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구성원과 사업 관계자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의 경우이며, 제보 시 관련 규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온라인 프렌즈 사이버 제보실 : <https://justice.kkpcgroup.com/app/ethicsReportInfo>

윤리 경영 방침

제정: 2021.06.29

개정: 2022.06.16

금호석유화학은 고객, 주주, 임직원, 인류, 환경을 위해 사회와 회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윤리를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최고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실천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장 총칙

1. 적용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 주주, 거래처,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이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2. 임직원의 의무

- ① 회사의 전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법령,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받게 된다.
- ② 회사의 전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은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한다.
- ③ 회사의 전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 우려가 있을 경우 상위 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윤리

3. 고객 존중

- 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 ② 고객에 대한 정보는 회사 자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써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고객 가치 창조

- ① 기존의 관행과 성공방식을 깨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②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5. 공정한 거래

-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② 신규 업체가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원하는 때에는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하여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③ 거래처 등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 ④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⑤ 구성원은 경조사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고객,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⑥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에 적절히 반영한다.
- ⑦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법규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⑧ 마케팅 및 라벨링에 대한 국제적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자유경쟁 추구

회사는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반경쟁적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상호발전 추구

회사의 전 임직원은 협력업체가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노하우 전수에 노력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윤리

8. 이익 보호 및 권리 보장

- ① 회사의 전 임직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 극대화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② 회사는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 및 재무상태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③ 회사는 회사경영에 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9. 구성원 존중

- ① 회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꿈의 일터를 만들고, 삶의 질 향상 및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10.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교육 등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함으로써 업무 성취 동기를 높여야 한다.

11. 인재 육성

회사는 구성원에게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12. 구성원의 기본 윤리

- ① 회사의 전 임직원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② 구성원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③ 구성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사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장내에서 음주,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④ 구성원간 금전거래, 연대보증, 선물 수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경조사 발생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부조금은 제외한다.

13. 사명의 완수

- ① 구성원은 사내·외에서 정정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완수한다.
- ② 구성원은 동료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성과와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
- ③ 구성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14. 공정한 직무수행

- ① 구성원은 모든 직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며, 고의로 문서 및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는 하지 않는다.
- ② 구성원은 권한과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15. 이해상충 회피

- ① 구성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구성원은 회사에 대한 사전보고 및 승인없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③ 구성원은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자산, 금전 기타 이득을 받거나 상호 대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6. 회사 자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 ① 구성원은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② 구성원은 회사의 재산, 비품, 자재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③ 구성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고객, 거래처 등 업무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정보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구성원은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⑤ 구성원은 컴퓨터 및 각종 기기의 사용에 있어 회사의 정보유출 방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17.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적 가치관, 거래의 관습 및 질서를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한다.

18. 사회발전에 기여

- ① 회사는 일자리 창출 및 성실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한다.
- ② 회사는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19. 정치활동 관여 금지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않으며, 임직원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단, 회사의 경영 및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0. 환경 및 안전

- ① 회사는 환경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 오염,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 ② 회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 ③ 회사는 안전 조업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저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한다.
- ④ 구성원은 사업장 내의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제6장 윤리경영 운영

21. 담당조직

- ①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윤리경영 실천방안 수립, 시행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한다.
- ②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22. 윤리경영 교육 및 평가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윤리경영 교육·지도·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3. 시행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윤리 경영 실천 지침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금호석유화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2. 방침

본 지침은 구성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 원칙

구성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질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①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 ② 이 결정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 ③ 이 결정이 관련 법규 및 회사의 윤리 규범과 일치하는가?

4. 용어의 정의

- ① 금품 등: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② 이해관계인: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행위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 ③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 구성원, 주주, 거래처, 지역사회, 국가 등)
- ④ 횡령: 회사 재산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 ⑤ 성희롱: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⑥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⑦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2장 실천 지침

5.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금지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취 및 제공하거나 금전거래(이하 대차, 보증, 담보제공 등을 포함함)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어지는 기념품 및 편의 또는 구성원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수수 및 제공은 제외한다.
- ② 이해관계자가 금품 등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며, 불가피하게 수수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 ③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수수된 금품 등의 반송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④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단, 당사 인트라넷 게시를 통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6. 접대 금지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임원 미만의 직원은 소속 임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이해상충 및 부정 퇴직자와의 거래 회피

- ①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윤리담당 부서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고 타 이해관계자의 거래 조건과 동일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 할 수 없다. 단,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임직원의 친인척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윤리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이해관계 상충을 피해야 한다.
- ④ 재직중 부정한 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와 거래행위는 할 수 없다.

8. 비공개 정보 사적 이용 금지

재직 기간 중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타회사 임직원 겸임 금지

타회사에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단,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외부강의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자산 및 정보의 유출 금지

- ①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②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12. 회사 비용의 투명한 처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한해 투명하게 비용처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도중(또는 인접 시점)에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목적에 적절치 않은 비용계정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13.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금지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4. 돈세탁 방지

비자금이나 범죄, 탈세, 뇌물 등과 관련된 정당하지 못한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돈처럼 탈바꿈하여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15.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구성원간 부당행위 금지

구성원간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장 내에서 음주,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6. 개인의 품위유지와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 ①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저속한 언행이나 옷차림으로 회사의 품위를 해쳐서는 안된다.

1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8. 금연

임직원은 금연규정을 필히 준수하여 전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 위반시 지침

19. 신고의무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0. 제보자 보호

- ①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보호한다.
- ②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신고내용이 신고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에 있어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21. 징계 및 포상

- ①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윤리규범 목표달성에 공로가 큰 구성원에게 포상 또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리더의 역할

22. 리더의 역할

- 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
- ② 직원들에게 사업 결과보다 윤리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시킨다.
- ③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조달 방침

제정: 2022.06.16

금호석유화학은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라는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상생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국제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 담당부서는 사회와 회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갖추어 지속가능한 조달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지속가능한 조달 실천 지침

1. 지속 가능한 조달

원료, 부재료, 포장재, 용역, 임가공 원료, 연료, 자재 조달 등의 모든 구매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한 조달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실천지침을 따른다.

- ① 구매시 공급망의 환경, 안전, 노동/인권, 기업윤리 등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 ② 공급망의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주요 협력사의 동반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다양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공급망 평가 및 관리

주요 공급업체 선정시 자체 평가 및 외부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참고하여 재무/비재무 전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는 공급망의 가격 경쟁력,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주요 평가에 참고하며, 구매 물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 등 사용에 있어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평가 한다. 선정 이후에도 환경/사회 관련 법규 위반, 체납 등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리스크 발생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공급망에 대한 ESG 관점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매 담당 부서는 자체적인 공급업체 ESG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공급망 ESG평가는 다음의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① 기업운영(전략계획, 운영계획, 공급처 관리능력, 자원관리)
- ② 기업윤리(반부패, 내부신고자 보호)
- ③ 노동/인권(아동노동, 보호대상 근로자 보호, 강제노동, 인도적 대우, 고충처리, 차별금지, 근로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결사의 자유 보장)

- ④ 안전환경보건(건강 및 안전)
- ⑤ 자재 및 구매(자재관리, 구매관리)
- ⑥ 품질 관리(품질로드맵, 품질 문제해결 능력, 제품 데이터 관리)
- ⑦ 생산 관리(생산시스템, 원가 절감)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우선 공급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공급망의 실질적 ESG 리스크 평가를 통해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공급업체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으로 건전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구매 윤리

금호석유화학은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사의 공정한 선정,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 발급 및 보존'의 공정거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다음의 활동을 준수한다.

- ① 입찰 거래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모든 공급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 ② 모든 공급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 ③ 각종 법규 및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 ⑤ 거래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상한다.
- ⑥ 공급업체의 기술이나 중요한 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 ⑦ 분쟁지역에서 생산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분쟁광물이 포함된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분쟁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확보 및 관리한다.
- ⑧ 모든 공급업체와 '금호석유화학 협력사 행동강령' 협약을 맺고 당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 방향성 및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독려한다.

금호석유화학 협력사 행동강령

제정: 2020.11.09

개정: 2022.06.16

금호석유화학은 지속가능한 기업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사회와 회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환경안전과 기업윤리를 최우선으로 실천함을 핵심가치로 삼고 노력한다. 또한 공정거래를 지향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협력사와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국제기준과 규범, 법적사항을 토대로 다음 행동협약서를 마련하여 체결한다. 다음 항목의 준수를 위한 상호의 노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구매를 추구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1. 환경/안전

- ① 모든 제조공정에 있어서 환경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친환경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장려한다.
- ② 설비의 지속적인 개선과 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 ③ 국내외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협약 등을 준수하며, 관련 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에너지 효율 및 기후 보호, 폐기물 감소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⑤ 지역사회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노동/인권

- ①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인신매매노동, 강제노동 금지)
- ② 법적 최소 근로 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의 고용을 금지한다. (아동노동 금지)
- ③ 성별, 학교,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괴롭힘이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④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최대 근로시간, 최저 임금, 근로조건 및 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준수한다.
- ⑤ 분쟁지역 광물을 원자재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관련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윤리/반부패

- ①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 균등한 대우를 하며,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② 거래 관계에 있어 청렴을 유지하며, 선물, 금품이나 금전적 이익의 제공 또는 기타 재정적

편의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 ③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공갈, 횡령, 청탁 등을 하지 않으며,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반부패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기타 모든 부정, 비윤리 행위 등 또한 금지한다.
- ⑤ 거래 관계에서 획득한 영업비밀, 기업 정보 및 개인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보관 및 사용하지 않는다.

조세 전략

제정: 2022.06.16

금호석유화학은 납세의무 이행, 과세 당국과의 협력, 세무 리스크 관리, 글로벌 합의사항 준수의 전략으로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조세 부문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납세의무 이행

금호석유화학은 납세 관련 법규에 따른 성실한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

2. 과세 당국과의 협력

투명하고 정직하게 과세당국과 협력하고,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충분히 소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세무 리스크 관리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검토 및 관리한다.

필요시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및 과세당국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또한 국내외 조세 법규의 제개정을 적시에 인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리스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한다.

4. 글로벌 합의사항 준수

조세 법규, 제도상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한 거래나 계약을 하지 않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조세구조를 통해 법인이 소재하는 각 조세관할권에 적정한 세액을 인식하고 납부한다.

본 정책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내 ESG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ESG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개정한다.

이사회 구성 방침

제정: 2022.06.16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핵심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정책에 관한 중요한 경영 사항, 주요 투자 및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의 선임/해임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등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되어야 한다.

1. 다양성

금호석유화학은 이사회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서 성별, 국적, 연령, 종교, 인종 등의 요소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각 분야별 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전문성

금호석유화학은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이사 후보 선정 단계부터 재무 및 회계, 법률, ESG,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조직운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교육 등을 진행하여 이사회가 전문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독립성

금호석유화학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 규정을 준용하거나,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외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선임한다. 또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사외이사는 후보 선정 단계부터 관련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주주들이 이사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